

ILS-005

기업윤리 정책



제·개·폐	일 자	시 행 일	승인권자	비 고
제정	2024.07.01	2024.07.01	대표이사	
관 련 사 규	1. 윤리강령서약서			

ILS-005-1/13	기업윤리 정책	
제정: 2024.07.01		
개정:		

목 차

제 1장 총칙

제 1조. 배경 및 목적

제 2조. 적용범위

제 2장 추진체계

제3조. 거버넌스

제 3장 기본원칙

가. 법규 및 규정준수 의무

나. 고객존중 및 품질

다. 주주에 대한 책임

라. 공정거래 및 경쟁 법규 준수(담합, 부당거래, 하도급 고정성)

마. 이해상충방지(겸직, 가족관계, 사적이익금지)

바. 부패 및 뇌물 수수 금지(금전/편의 수수 금지, 접대 한도 등)

사. 내부 정보 보호 및 정보공개 원칙

아. 신고제도 및 내부고발자 보호

제 4장 이행 및 사후관리 체계

제 4조. 윤리교육 및 실천 체계

제 5조. 정책 위반 시 조치 및 제재

제 6조. 정책 이행 점검 및 감사 방법

ILS-005-2/13	기업윤리 정책 
제정: 2024.07.01	
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 배경 및 목적

일진하이솔루스는 모든 임직원이 윤리적 가치와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법령을 준수하고, 고객, 주주,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공고히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것을 기업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본 윤리경영 정책은 회사의 윤리적 가치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모든 임직원이 실무에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기준과 업무 처리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조직 전반에 윤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이를 통해 일진하이솔루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 윤리경영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회사는 윤리경영 조직과 절차를 체계화하고, 윤리위험 식별, 모니터링, 개선 조치, 임직원 교육 등 예방 중심의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윤리경영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세부 실행지침은 『청렴윤리경영 시행세칙』을 통해 별도로 규정하고 운영한다.

※ 본 윤리경영 정책은 다음과 같은 국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수립되었다.

UN 글로벌 컴팩트(UNGC) 제10원칙: 부패방지 원칙

OECD 다국적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공정경쟁, 이해충돌 방지, 투명한 정보공개 등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 기업의 윤리적 책임과 인권 존중 의무

일진하이솔루스는 이러한 국제 기준을 기반으로 윤리경영을 기업문화의 핵심으로 삼고, 국내외 이해관계자에게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ILS-005-3/13	기업윤리 정책 
제정: 2024.07.01	
개정:	

제 2조 적용 범위

본 기업윤리정책의 적용 대상은 현재 일진하이솔루스 본사 및 국내외 사업장의 모든 임직원을 포함하며, 향후 해외법인, 합작회사, 자회사 및 계열사가 설립될 경우, 해당 조직에도 본 정책이 확대 적용된다. 더 나아가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공급업체 및 사업 파트너 등을 대할 때에도 본 정책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 기업윤리정책에서 다루는 사항이 해당 국가의 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을 우선적으로 준수한다.

제2장 추진 체계

제3조 거버넌스

① 윤리경영 관리체계

대표이사는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 정착 및 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윤리경영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에 의하여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 또는 주요 부서의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나 경영회의를 통해, 기업윤리 관련 정책 및 규정의 수립·개정, 윤리적 리스크의 관리 및 점검, 윤리경영 이행 전반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한다.

② 윤리경영 전담부서

회사는 윤리경영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윤리경영 전담조직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해당 조직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제도 운영, 정책 위반 사항에 대한 대응 및 예방 활동은 물론, 윤리경영 관련 교육, 점검 및 개선 등 전반적인 이행 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기본 원칙

가. 법규 및 규정준수 의무

ILS-005-4/13	기업윤리 정책	
제정: 2024.07.01		
개정:		

회사와 구성원은 국내외 관련 법령, 회사의 내규 및 윤리경영 정책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 시 항상 법적·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판단과 행동을 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의 법령과 국제기준을 포함한 반부패·공정거래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활동을 실천하여야 한다.

- OECD 뇌물방지협약, UN 부패방지협약,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영국 뇌물방지법(UK Bribery Act),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 국제 협약 및 주요 국가의 반부패 관련 법률
- 국내 「형법」 상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 자금세탁방지(AML) 및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국내외 법규 및 관련 지침

회사는 임직원이 이러한 기준을 이해하고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지침, 내부통제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위반 시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히 조치한다.

나. 고객존중 및 품질

① 고객 중심 경영

회사는 고객가치를 경영의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최상의 수소 관련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증진시킨다.

② 품질 및 안전 확보

회사는 연구개발, 생산, 유통,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품질 및 안전 기준을 저해하거나 고객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다. 관련 법규, 계약, 품질방침에 따른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며, 품질경영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품질을 확보한다.

③ 정직한 정보 제공

회사는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성능, 위험요소, 사용법 등에 대해 고객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허위, 과장, 축소, 은폐 등의 정보왜곡 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

ILS-005-5/13	기업윤리 정책 
제정: 2024.07.01	
개정:	

④ 고객 의견 존중 및 대응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 수용하며, 고객의 불만이나 제안사항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고객의 의견은 경영 및 제품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고객 관계를 구축한다.

⑤ 고객 접근성과 차별 금지

회사는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의 사유로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에 부당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접근성 개선 조치를 취한다.

⑥ 개인정보 및 자산 보호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며,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수집, 보관, 이용, 폐기 전 과정을 엄격히 관리한다. 고객 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하며,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한다.

다. 주주에 대한 책임

① 주주가치 제고

회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주주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효율적인 경영 활동과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통해 건전한 이익을 창출하고, 그 성과를 주주와 공유한다.

② 주주 및 투자자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정보공개

회사는 정확하고 성실한 회계처리를 통해 재무상태를 정직하게 기록·관리하며, 제반 법령 및 회계기준에 따라 기업 활동, 재무정보, 지배구조, 비재무적 정보 등을 적시에 공개함으로써 주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회사는 이사회 중심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아울러, 회사의 내부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불공정한 증권거래 등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

ILS-005-6/13	기업윤리 정책 ILJIN Hysolus
제정: 2024.07.01	
개정:	

라. 공정거래 및 경쟁 법규 준수(담합, 부당거래, 하도급 공정성)

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준수

회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지향하며, 모든 임직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경쟁법을 준수한다. 임직원은 경쟁사와의 가격 고정, 입찰 담합, 시장 분할, 생산량 제한, 정보 교환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담합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임직원 뿐만 아니라 회사의 계약업자, 공급업체 등 비즈니스 파트너 역시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공정거래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회사는 모든 계약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체결하며, 임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계약은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표준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구두 합의나 임의적인 계약 변경은 금지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직원은 협력사, 고객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금전 또는 편의 제공 요구, 대금 지급 지연, 부당 반품, 인사 개입 등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계약 강요, 부당한 단가 인하, 기술자료 요구, 납품 지연 등 협력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회사는 협력사 및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거래관계 유지, 그리고 동반성장 실현을 추구한다.

③ 불법·부정 거래 금지

회사는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거래 관행이 불투명한 개인, 기업, 국가와의 거래를 지양하며, 허위 계약, 변칙 거래, 위장 발주 등의 행위에 임직원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임직원은 경쟁사, 협력사, 기타 외부기관의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 영업비밀 보호와 정보윤리를 철저히 준수한다.

ILS-005-7/13	기업윤리 정책 
제정: 2024.07.01	
개정:	

④ 무역 및 세무 관련 법규 준수

회사는 국제 거래, 수출입, 이전가격, 세무보고 등과 관련하여 각국의 법령과 국제 규범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재 대상 국가 또는 기업과의 거래는 사전 승인 및 내부 검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불법적·변칙적 거래는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각국의 시장경제 질서 및 공정한 거래 관행을 존중하며, 세무 관련 업무는 정직하고 투명하게 수행한다. 사업장이 위치한 모든 국가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마. 이해상충방지(겸직, 가족관계, 사적이익금지)

회사는 임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인의 이해관계가 회사의 이익이나 고객·이해관계자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상황에 대해 적절히 신고·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회사는 이해상충 관련 상황에 대해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예방 교육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① 이해상충의 회피 및 우선 고려 원칙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회사 또는 고객과 개인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법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② 겸직 및 외부 활동 제한

임직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 외 타 기업이나 기관에서 외부 직무를 겸직하거나, 외부 활동(강연, 자문, 경영참여 등)을 수행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업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하게 외부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 또는 인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외부 활동 중에도 회사의 이익을 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외부 활동 시에는 회사의 자산, 명의, 기밀정보 등을 활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ILS-005-8/13	기업윤리 정책 
제정: 2024.07.01	
개정:	

③ 가족관계 및 이해관계자 연계 제한 사적 관계 기반 영향력 행사

임직원은 가족, 친인척 또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이해관계자가 연루된 기업 또는 조직과의 거래나 계약, 채용 등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되며,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즉시 자진 신고하고 회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은 본인 또는 가족·친인척 등 개인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협력사, 고객 등과의 업무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채용 청탁, 인사 개입, 친족이 관계된 기업과의 거래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고지 및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사적 이익 추구 금지

임직원은 직무상 권한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고객·협력사·이해관계자에게 금전이나 편의를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사에 인사청탁, 사적 부탁 등을 하는 행위 역시 이해상충에 해당하며 금지된다.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 정보, 직무상의 지위 등을 사적으로 활용하거나, 이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명백한 이해상충으로 간주된다.

-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
- 회사와의 직접적인 계약 또는 거래 참여
- 이해관계 기업의 주식 보유, 경영 개입, 자문 활동 등

⑤ 이해상충 상황의 신고 및 자문 의무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이해상충이 예상되는 상황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관리자 또는 윤리경영 전담부서에 신고하고 필요한 자문을 받아야 한다. 회사는 보고된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직무변경, 활동의 제한 또는 중단 등)를 취할 수 있다.

바. 부패 및 뇌물 수수 금지(금전/편의 수수 금지, 접대한도 등)

ILS-005-9/13	기업윤리 정책	
제정: 2024.07.01		
개정:		

청렴·윤리경영을 기본 바탕으로 국가 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공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하도록 노력한다. 회사는 국내외 반부패 관련 법규 및 국제협약을 철저히 준수하고, 임직원은 직무상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제공하지 않으며,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수단을 이용한 모든 형태의 부패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① 선물, 접대 및 뇌물 수수 및 제공 금지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직무 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금품, 접대, 편의, 선물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② 부정청탁 및 공직자 및 공공기관과의 거래 시 유의사항

임직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또는 내부 임직원 간 부정청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관계자와의 거래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미국 FCPA, 영국 Bribery Act 등 국내외 법령 및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거래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외국을 포함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관계자에게 뇌물 제공,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적절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다.

③ 자금세탁 방지

고객, 협력업체, 기타 제3자와의 거래 시 자금세탁 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위법의 소지가 있는 거래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윤리경영 담당부서 또는 컴플라이언스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내부자 거래 및 횡령·배임 금지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 또는 공금을 유용하는 행위(횡령), 회사의 이익에 반해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배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위는 윤리규범 위반일 뿐 아니라,

ILS-005-10/13	기업윤리 정책 
제정: 2024.07.01	
개정: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회사는 적발 시 징계 및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엄정한 대응을 시행한다.

⑤ 정치적 중립 및 기부 활동

회사 명의 또는 자산을 이용한 기부 및 후원 활동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관련 법규 및 내부 지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을 존중하되, 회사 명의로 정치적 기부 또는 후원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사. 내부 정보 보호 및 정보공개 원칙

① 임직원 정보 보호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과 범위를 사전에 고지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다.

② 내부 정보의 보호 및 오남용 금지

임직원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회사의 기밀 정보, 영업 전략, 기술 정보, 고객 및 협력사 정보 등 모든 내부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내부자거래)나 제3자에게의 무단 제공은 엄격히 금지된다.

③ 정보자산 및 지식재산권 보호

회사의 유·무형 자산(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권, 데이터 등 포함)은 승인된 목적과 방식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 된다. 임직원은 회사뿐만 아니라 협력사 및 타인의 지식재산권 또한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등 위법 자산의 사용도 금지된다.

ILS-005-11/13	기업윤리 정책 
제정: 2024.07.01	
개정:	

④ 정보의 정확한 기록 및 관리

회사는 회계 및 경영 정보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하고 성실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정보의 은폐, 왜곡, 지연 보고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모든 재무 및 비재무 정보는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정보공개의 투명성 및 책임성

고객, 주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정확하고 충분해야 하며, 허위·과장·축소된 정보, 은폐행위 등은 금지된다. 회사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제품·서비스, 지속가능경영 등 비재무정보에 대해서도 정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 정보 공개의 시기와 범위는 관련 법규 및 회사 방침에 따른다.

⑥ 소셜미디어 및 외부 공개 발표 제한

임직원은 강연, 인터뷰, 보고서, 외부 기고 등 회사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반드시 사전적으로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셜미디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의견을 표명할 경우, 개인 의견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회사 또는 임직원 전체의 공식 입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 신고제도 및 내부고발자 보호

① 윤리/준법 위반 신고

윤리정책 및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조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24시간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임직원은 물론 외부 이해관계자(고객, 협력사 등)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가능하고, 이메일, 온라인 시스템, 서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② 윤리/준법 신고 처리

신고 접수 후 회사는 전문부서의 사실관계 조사 및 검토를 거쳐, 관련 법규 및 사내 절차에 따라 시정 조치 및 피해자 보호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신고 및 제보는

ILS-005-12/13	기업윤리 정책 
제정: 2024.07.01	
개정:	

익명성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며, 내부 고발자와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신고로 인해 내부 고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운영한다.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제보 행위에 따른 제보자의 불이익 등 피해 발생 유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제 4장 이행 및 사후관리 체계

제 4조 윤리교육 및 실천 체계

회사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의 정착과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회사는 신규 입사자, 관리자, 윤리/준법 리스크 관련 직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회사는 교육 이수 및 실천 점검 결과를 인사평가, 보상, 승진 등 인사관리 기준과 연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윤리경영이 조직문화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한다.

제 5조 정책 위반 시 조치 및 제재

임직원이 본 윤리정책 또는 관련 법령, 사규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위반 행위의 사실 여부와 경중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합당한 징계 처분 및 조치를 취한다. 윤리정책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및 징계 절차는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피조사자 및 신고자의 권익은 관련 법령과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보호된다. 위반 행위의 은폐, 허위 보고, 조사 방해,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 등 2차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응한다. 회사는 위반 사례를 분석하고,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본 기업윤리정책을 적용 받는 조직은 위반 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내부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제 6조 정책 이행 점검 및 감사 방법

① 윤리 리스크 식별 및 평가

회사는 윤리경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 전반의 윤리 리스크를 식별하고, 정책 이행 수준, 위반 가능성, 제도 미비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필요 시 특정 부서 또는 고위험 사업 영역을 대상으로 별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모니터링 및 감사 실시

회사는 기업윤리정책의 이행 상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은 윤리교육 이수현황,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위반 건수, 내부통제 운영 실태 등 주요 지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정기 또는 수시 감사를 통해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진단 또는 자문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조치 이행 및 제도 개선

모니터링 및 감사 결과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방조치, 개선 권고, 시정 조치 등의 대응을 신속하게 이행하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조치 결과 및 제도 보완 현황은 윤리경영 전담부서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④ 보고 및 정보 공개

중대한 감사 결과 및 시정 조치 사항은 경영진 또는 윤리경영위원회에 보고하며, 정책 이행에 대한 주요 성과 및 조치 사항은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내 인트라넷 등 이해관계자가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

일진하이솔루스주식회사 대표이사 임 만 규 (서명)

